

기초공통 과목 대체허가원

「대학원학칙 정보보호대학원 시행세칙」 제 6조(학점취득) 4항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초공통 과목 대체를 허가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정책분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초공통 과목을 아래와 같이 대체 지정할 수 있다.
2. 과목 대체허가원은 학적변동기간에 제출해야하며, 대체를 허가받은 후에 수강신청하고 이수한 과목에 대해서만 대체를 인정한다.
3. 정책분야로 대체를 허가 받은 이후에 분야가 다시 변경될 경우, 기존 요구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요구 과목		대체(인정) 과목	
학수번호	과목명	학수번호	과목명
SCS501	보안공학	SCS502	개인정보보호법제
SCS502	개인정보보호법제	SCS511	정보보호기술개론
SCS503	현대암호학	SCS512	정보보호정책

※ 기초공통 대체 지정사항은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학과(전공) :

학 번 :

학생 성명 :

(인)

지도교수 :

(인)

년 월 일

정보보호대학원장 귀하